

구 매 시 방 서

[규격서 포함]

사 업 명	2026년 감자계약재배단지 공동시설(시설장비) 지원사업 - 지게차 구입 -
주관기관	안정농업협동조합



안정농업협동조합

구 매 시 방 서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2026년 감자계약재배단지 공동시설(시설장비) 지원사업」을 위한 지게차 구매에 따른 납품기한, 공급 지게차의 규격(형식), 제품, 납품 및 파손 지게차의 교환, 납품방법 등의 조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적용사항

가. 건 명 : 「2026년 감자계약재배단지 공동시설(시설장비) 지원사업」 지게차 구입

나. 물품내역 : 디젤 지게차(2.9톤 이상 3톤 미만) 1대

3. 기자재 사양

※ 규격서 참조

4. 공급업체 준수사항

가. 납품장비의 사후관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나. 기계(지게차) 납품 시 파손이나 시험 Test 중 에러가 발생하였을 경우 A/S를 불허하며 교체를 의무화 함.

다. 생산업체가 불분명한 기계(지게차)는 납품이 불가하며, 납품장비는 생산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

라. 가격대 성능비가 뛰어난 기계(지게차)를 공급함을 원칙으로 함.

마. 본 규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정상가동을 위한 필요 부품들은 반드시 공급되어야 하며, 이를 간과하여 기계(지게차)의 정상가동이 불가능 할 시는 공급업체의 부담으로 정상 가동되도록 책임져야 함.

5. 구매물품의 공급범위

가. 각 규격서의 본체 및 악세사리 일체

나. 관련 부대설비

다. 1년간 운전에 필요한 지게차 관련 소모품

6. 납품일정 및 납품장소

가. 구매장비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나. 구매장비는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별도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제반비용은 공급업체에서 부담한다.

다. 구매장비 설치하는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일정에 맞추어 납품하여야 한다.

7. 기타업무

- 가. 현장수송
- 나. 현장설치 및 시운전
- 다. 장비사용을 위한 기술교육
- 라. A/S 1년 무상
- 마. 성능시험 및 검사

8. 구매조건

장비 공급업체는 본 일반 시방서의 모든 사항과 관계법 및 규정을 준수함은 물론 기기설치 설명서에 의거하여 성실히 납품설치 하여 모든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가. 감독자(기관)라 함은 장비의 설치, 가동 등의 감리기능을 행하는 자(기관)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시행령 제55조에 의거 수요기관에서 선정한 자(기관)를 말한다.
- 나. 감독자(기관)는 공급업체에서 설치하는 장비에 대한 제반 검사의 기능을 수행한다.
- 다. 공급업체는 감독자(기관)의 지시에 절대 순응하고 장비설치에 관한 제반사항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9. 장비공급 및 설치

- 가. 2026년도에 국내에서 제작된 제품으로 계약 후 7일 이내에 납품일정, 작업일정 등을 수요기관에게 통보한다.
- 나. 장비 설치 중 장비자체에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동 하자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사진 또는 작업진행일지 등을 상세하게 기입하여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다. 장비 Setting 시 이와 관련이 없는 타인의 출입을 감시하고 도난 및 기타 사고의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 라. 장비 공급업체는 설비된 장비를 감독자(기관)에게 최종 인계할 때까지 모든 관리 (보관 등) 책임을 진다.
- 마. 설치 장소의 기존 구조물과 설비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할 것이며 만일 이에 대한 훼손을 가하였을 시는 공급업체가 원상복구 한다.
- 바. 각 장비를 설치완료 후 감독자(기관)의 입회하에 시험운전을 완료하여야 하며 공급업체는 구매장비의 Setting 및 시험 작동까지 완료하여야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10. 사고보고 및 책임

장비 Setting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혹은 사고 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보고하고,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공급업체가 책임지고 해결한다.

11. 장비 유지보수

- 가. 납품된 장비가 정상 가동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사용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나. 하자보증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하자보증기간 중 발생한 장비고장에 대하여는 장비고장 통보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이를 정상가동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12. 납품특수조건 (*중요 사항)

- 가. 납품한 기계에 대하여는 내용연수 기간 동안 기계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 가. 공급업체는 「안정농업협동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장비납품 완료 후 세부사양 확인, 시험가동 완료 등 일체의 하자가 없음이 확인된 이후 수요기관의 통보에 따라 장비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 나. 장비구축 시 유의할 사항은 장비구축을 위한 시방서 내용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다. 구매장비의 하자보수 A/S 등 수요기관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시방서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요기관에서 대행 처리 후,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업체에 청구한다.
- 라. 장비공급업체는 장비 운영에 대한 분야별 기술이전 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실무자 및 관리자 운영 노하우를 무료로 제공한다.
- 다. 사용 중 기계 수리 요구 시 신속하게 수리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 라. 기계 구입목록 중 단종, 생산중단 등으로 납품할 수 없을 경우 해당 기계 성능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기종을 안정농업협동조합과 협의하여 납품할 수 있다.
- 마. 건설기계 정비업 면허를 갖춘 업체여야 한다.

13. 기타사항

- 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기계 납품과 관련된 사항은 안정농업협동조합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 나. 계약자는 물품규격서의 품질성능에서 동일규격 또는 동급이상의 제품을 납품할 수 있어야 하며, 계약자의 과업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계약 이행사항이 불성실할 경우 본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으며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 1) 기계 납품 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 2) 발주처의 과업지시에 3회 이상 불응했을 때
 - 3) 기타 관계법령(계약조건) 및 과업지시를 위반했을 때
- 다. 관계직원 검수 시 시운전을 하여야 하며, 파손(불량)된 기계 발견 시에는 즉시 교환을 원칙으로 하고, 납품 후(사용 전) 파손(불량)된 기계가 발견될 시에도 교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라. 본 시방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입찰 전에 반드시 안정농협 농산물유통센터(054-631-5800)로 질의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 후에는 안정농협과 협의 후 지시에 따라야 한다.

규격서

1. 품 명 : 디젤지게차(2.9톤 이상 3톤 미만)

2. 형식 및 수량

· 형 식 : 디젤지게차 2.9톤 이상 3톤 미만(좌승식 타입)

· 수 량 : 1대[특수사양(옵션)품목 및 지급품목 포함]

3. 납품장소 : 안정농협 농산물유통센터(경북 영주시 안정면 안풍로 33)

4. 규 격 : 2.9톤 이상 3톤 미만

5. 기본사양(아래 사양 이하)

- 지게차 : 좌승식
- 적재능력 : 2.9톤 이상 3톤 미만
- 하중중심 : 500mm
- 3단 마스트 최대인상높이 : 4,800mm
- 주차브레이크 : 손 / 기계식
- 차량제원 : 전장(2,762MM)<포크제외>, 전폭(1,235MM), 높이(2,183MM)
- 타이어 : 전륜 공기압 8.15*15-14(4개) + 후륜 공기압 6.50*10-12(2개)
- 엔진 : 정격출력 65PS/2,300rpm 국산엔진
- 상기제원은 동등 및 이하이어야함.

6. 옵션 및 지급품

구 분	비고
특 수 사 양 (옵 션)	○ 3단마스트 4,730mm ○ 캐빈(전·후방카메라, 에어컨, 히터포함) ○ 사이드쉬프트 +포크무버 ○ 레드라인(안전등) ○ 시트벨트인터락(유압안전장치) ○ 카운트밸런스밸브(틸트안전장치) ○ 전·후 타이어 각1개(휠포함) ○ 더블타이어(전륜)
지 급 품	○ 운전자 및 부품매뉴얼 1부. ○ 기본공구 1식 ○ 포크캡 1set

